투자 위험 등급 4 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TB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0 년 9 월 16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 년 9 월 23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i-ktb.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20.09.16)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V584)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TB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TB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채권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밖에 주식에 30% 이하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 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채권운용 전략]** ①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 중심의 채권편입으로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② 듀레이션 1.0 내외에서 중립적으로 구성하여 금리변동위험 최소화 ③ 저평가 종목 발굴 투자, 절대수익이 높은 채권으로의 교체매매를 통해 운용수익 제고 ④ 자산배분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 **[주식운용 전략]** ① 배당주 투자전략 - KTB자산운용의 세가지 Value Point[주주가치 환원(Value – Return)/가치 성장(Value – Growth)/저평가(Under – Valued)]에 근거한 배당주 종목 선정 - 포트폴리오의 평균배당수익률이 KOSPI 평균 배당수익률을 초과하도록 구성 ② 공모주 투자전략 - 공모주 투자 프로세스 : 엄격한 투자심사 → 투자대상 선정 → 체계적 리스크 관리 → 철저한 가치평가 → EXIT(매도) 결정 *** 비교 지수: KOSPI x 30% + 국고채1년 x 7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 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	1.00%	0.50%	0.87%	153	259	368	595	1,258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40%**	**0.90%**	1.18%	144	**293**	445	761	1,68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0.75%**	**0.25%**	0.63%	103	**183**	264	435	9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95%**	**0.45%**	0.75%	98	**199**	303	518	1,148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2019/09/15~2020/09/14	최근2년 2018/09/15~2020/09/14	최근3년 2017/09/15~2020/09/14	최근5년 2015/09/15~2020/09/14	설정일이후 2014/09/15~2020/09/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4-09-15	5.72	2.12	2.23	2.76	2.96
비교지수		6.79	2.15	1.65	2.73	2.23
수익률 변동성		8.83	6.95	6.21	5.27	5.15

(주1) 비교지수 : KOSPI x 30% + 국고채1년 x 7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0.08.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우형진	1968년	책임(본부장)	24개	18,952억	5.93	-	5.93	3.50	18 년 7 개월
이주호	1975년	책임(부장)	5개	435억	6.48	3.74	5.93	3.50	5 년 10 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 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 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 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의 대부분을 배당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 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i-ktb.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KTB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i-ktb.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0년 9월 23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ktb.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ktb.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V58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V560
수수료선취-온라인(Ae)	AV5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V5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V5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AV56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V5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417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8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8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BW7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B1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B1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B1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B1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B1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B1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DB1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V58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V560
수수료선취-온라인(Ae)	AV5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V5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V5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AV56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V5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B417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8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8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BW7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B1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B1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B1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DB18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DB1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B1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DB1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내 용
2014.09.15	최초설정
2015.06.04	클래스 신설 (종류 CW)
2015.10.23	환매수수료 폐지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7.04.29	클래스 신설(종류 Ag, 종류Cg)
2017.09.06	클래스 신설(종류 CI2)
2018.09.2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이주호, 김정희 → 이주호, 우형진)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20.09.23	클래스 신설(종류 CF, 종류C-P, 종류C-Pe,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종류S-P(퇴직))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 → 4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20.08.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국내-혼합채권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우형진	1968년	책임(본부장)	24개	18,952억	5.93	-	5.93	3.50	18 년 7 개월
	· 주요 이력: - '01.01~'10.12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1.01~'15.02 하나 UBS 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5.02~'18.08 현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 '18.09~ 현재 KTB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국내-혼합채권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주호	1975년	책임(부장)	5개	435억	6.48	3.74	5.93	3.50	5 년 10 개월
	· 주요 이력: - '03.07~'04.06 KPMG(회계감사) - '04.07~'06.03 Piolink(재무기획) - '06.03~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운용 기간
김정희	채권운용	2014년 09월 15일 ~ 2018년 09월 19일
이주호	주식운용	2014년 09월 15일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종류별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0 이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2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0.15%이내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보수합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53	0.50	0.03	0.017	1.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25			0.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90			1.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5			0.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10			0.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00			0.5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5			0.7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5			0.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63			1.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0.02			0.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03			0.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60			1.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30			0.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52			1.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26			0.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18			0.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0.17			0.67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산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그 밖에 주식에 자산총액의 30% 이하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채권**	**50% 이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②	**주식**	**30% 이하**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⑤	증권 대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⑥	증권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③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자세한 투자대상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⑤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④ 내지 ⑥, '나. 투자제한' ② 및 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 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 월간은 '나. 투자제한' 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국공채 중심의 안정적인 채권 투자**
-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주 선별투자 및 성장성이 높고 우량한 중대형급 신규 IPO에 참여하여 '+α' 성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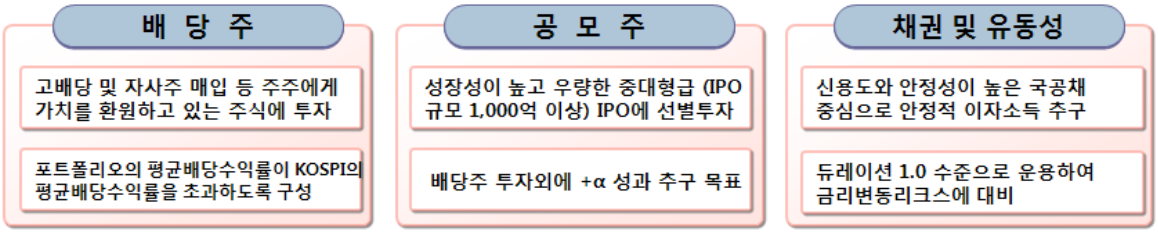

[채권 투자전략]

① 기본 투자전략

- 신용과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 중심의 채권편입으로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 듀레이션 1.0 내외에서 중립적으로 구성하여 금리변동위험 최소화

② 세부 투자전략

1) 저평가 종목 발굴 투자, 절대수익이 높은 채권으로의 교체매매를 통해 운용수익 제고
   - 만기별 / 종류별 채권스프레드분석, 일드커브분석
   - 비교대상채권간 고평가/저평가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교체매매
   -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 구간별 기대 수익률 계량화를 통해 고평가/저평가의 객관적인 판단

2) 자산배분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리스크 관리에 중점
   - 강세장시 듀레이션 범위 : 1.0 ~ 1.5
   - 약세장시 듀레이션 범위 : 0.5 ~ 1.0

[주식 투자전략]

① 배당주 투자전략

- KTB 자산운용의 세가지 Value Point 에 근거한 배당주 종목 선정
- 포트폴리오의 평균배당수익률이 KOSPI 평균 배당수익률을 초과하도록 구성

1) 주주가치 환원 (Value – Return)
   - 배당 및 자사주매입 등 주주에게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환원하고 있는 기업 선정
   - 주주환원정책의 건정성, 지속성, 변화가능성을 검토

2) 가치 성장 (Value – Growth)
   - 기업이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배당, 자사주 등)의 기초가 되는 잉여현금흐름(FCF)의 증가에 초점
   - 한국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섹터 및 종목 선정

3) 저평가 (Under – Valued)
   -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 기존의 저 PER, PBR 등 회계상 가치보다는 잉여현금흐름(FCF) 등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춘 가치평가

② 공모주 투자전략

- 공모주 투자 프로세스 : 엄격한 투자심사 → 투자대상 선정 → 체계적 리스크 관리 → 철저한 가치평가 → EXIT(매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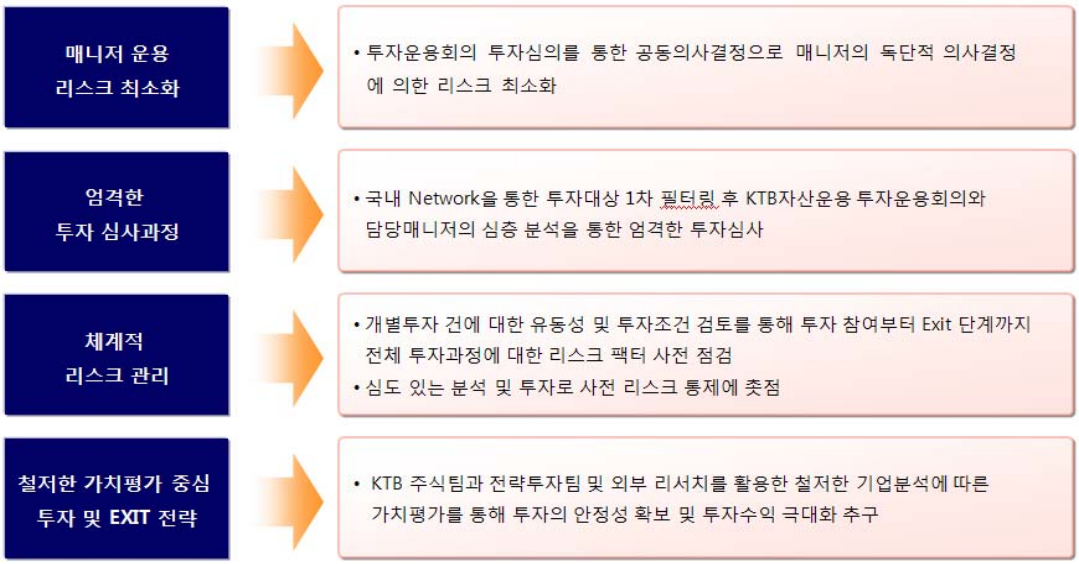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주식(배당주 및 공모주 등)에의 투자는 30% 이하로 투자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x 30% + 국고채1년 x 70%**

나. 위험관리

(1) 고배당주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함으로 지나친 집중투자를 배제하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하여 리스크를 줄일 계획입니다.

(2) 개별 투자건에 대한 유동성 및 투자조건 검토를 통해 투자참여부터 Exit 단계까지 전 투자과정 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며, 내부 리서치조직 및 외부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철저한 기업분석에 따른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수익 극대화 추구할 계획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의 대부분을 배당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주식(배당주 및 공모주 등)에의 투자는 30% 이하로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일반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투자 및 주식투자(가치성장주 등)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6.21%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보통인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3등급	4등급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2017.09.28	4등급	5등급	위험등급분류 기준 변경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20.09.23	5등급	4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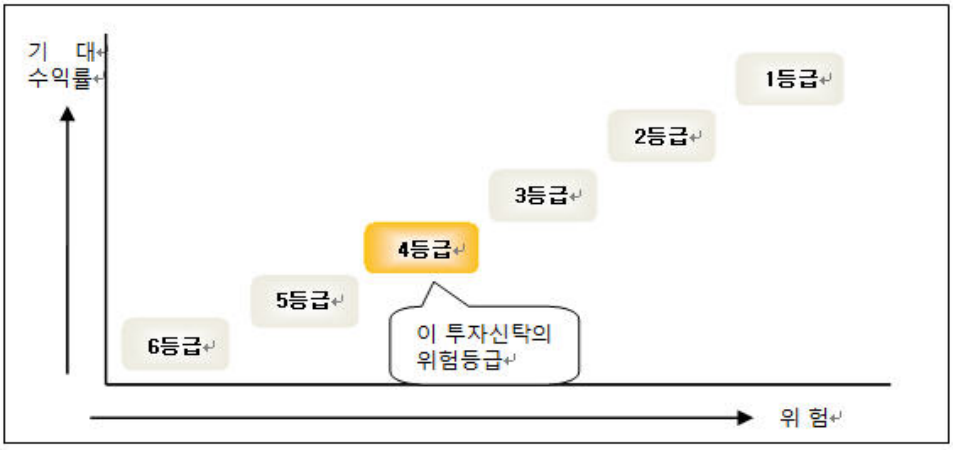

<KTB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3.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A- 이상), CP(A1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 이상향될 수 있습니다.
12.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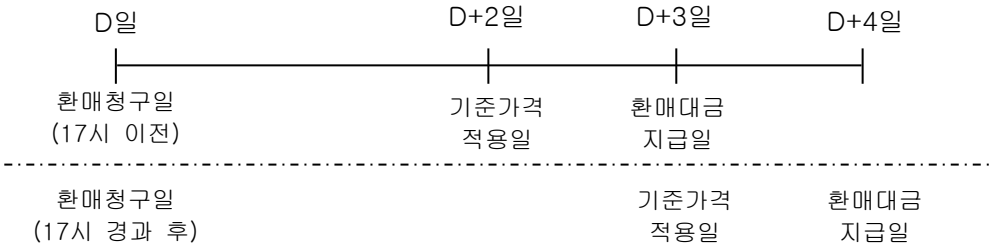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기준가격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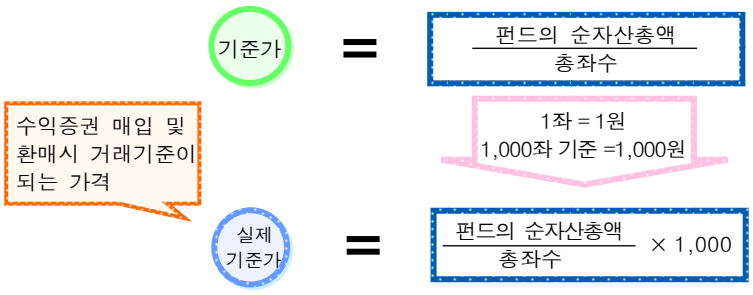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급비율(%)</th></tr>
<tr><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납입금액의 0.50 이내</td><td rowspan="13">해당사항 없음</td><td rowspan="1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수수료선취-온라인(Ae)</td><td>납입금액의 0.25 이내</td></tr>
<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td><td>납입금액의 0.25 이내</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td><td rowspan="1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C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td></tr>
<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td></tr>
<tr><td>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td><td>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0.15%이내</td></tr>
<tr><td>지급시기</td><td>매입시</td><td>환매시</td><td>환매시</td></tr>
</table>

주) 1.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시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3.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53	0.5	0.03	0.017	1.00	0.009	1.009	0.87	0.129
수수료선취-온라인(Ae)		0.25			0.75	0.009	0.759	0.63	0.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9			1.40	0.009	1.409	1.18	0.1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5			0.95	0.009	0.959	0.75	0.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1			0.60	0.000	0.600	-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			0.50	0.006	0.506	-	0.11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5			0.75	0.009	0.759	-	0.1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5			0.85	0.009	0.859	-	0.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63			1.13	0.009	1.139	-	0.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0.02			0.52	0.009	0.529	-	0.1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03			0.53	0.009	0.539	-	0.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60			1.10	0.009	1.109	-	0.1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30			0.80	0.009	0.809	-	0.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52			1.02	0.009	1.029	-	0.1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26			0.76	0.009	0.769	-	0.1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18			0.68	0.009	0.689	-	0.1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0.17			0.67	0.009	0.679	-	0.133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로 작성되었습니다.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금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6.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종류C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53,174	259,245	368,097	594,708	1,257,846
수수료선취-온라인(Ae)	102,735	182,525	264,407	434,870	933,7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44,423	292,544	444,548	760,995	1,687,0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8,298	199,112	302,570	517,952	1,148,2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61,500	124,575	189,304	324,057	718,3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51,865	105,058	159,646	273,288	605,84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77,798	157,587	239,469	409,933	908,76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112,985	203,288	295,958	488,880	1,053,4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116,748	236,485	359,362	615,169	1,363,7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54,223	109,834	166,903	285,711	633,3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55,248	111,910	170,058	291,112	645,3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13,673	230,256	349,896	598,966	1,327,8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82,923	167,969	255,245	436,937	968,6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105,473	213,646	324,656	555,758	1,232,0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78,823	159,664	242,624	415,334	920,7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70,623	143,054	217,384	372,126	824,9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퇴직))	69,598	140,977	214,229	366,725	812,980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는 납입금액의 0.5%, Ae 및 Ag는 납입금액의 0.25%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6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종류 S 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2016년 9월 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4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이며,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제5기 및 제6기의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20.09.14	2019.09.14	2018.09.14
운용자산	51,635,524,436	90,073,876,614	97,591,819,539
유가증권	49,686,843,775	77,952,804,759	77,144,603,26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58,680,661	130,484,455	199,175,517
기타 운용자산	1,390,000,000	11,990,587,400	20,248,040,753
기타자산	475,781,303	223,793,404	1,468,882,681
자산총계	52,111,305,739	90,297,670,018	99,060,702,22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378,987,480	2,109,748,117	2,095,205,572
부채총계	1,378,987,480	2,109,748,117	2,095,205,572
원본	45,208,163,224	82,776,995,351	88,959,013,72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5,524,155,035	5,410,926,550	8,006,482,921
자본총계	50,732,318,259	88,187,921,901	96,965,496,648
운용수익	2,355,795,413	67,460,386	3,226,811,456
이자수익	996,529,751	1,305,067,988	1,272,598,807
배당수익	552,450,156	669,055,249	580,597,032
매매평가차손익	806,813,787	-1,906,686,685	1,373,590,699
기타수익	1,719	23,834	24,918
운용비용	6,425,036	7,462,218	8,331,835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454,386	1,689,198	2,580,495
기타비용	4,970,650	5,773,020	5,751,340
당기순이익	2,349,370,377	59,998,168	3,218,479,621
매매회전율	214	98	129

주)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20.09.14	2019.09.14	2018.09.14
운용자산	51,635,524,436	90,073,876,614	97,591,819,539
현금및예치금	558,680,661	130,484,455	199,175,517
현금및현금성자산	558,680,661	130,484,455	199,175,517
대출채권	1,390,000,000	11,990,587,400	20,248,040,753
콜론	390,000,000	1,000,000,000	2,95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000,000,000	2,000,000,000	9,800,000,000
매입어음	0	8,990,587,400	7,498,040,753
유가증권	49,686,843,775	77,952,804,759	77,144,603,269
지분증권	15,217,425,310	26,695,566,205	28,386,633,410
채무증권	34,469,418,465	51,257,238,554	48,757,969,859
기타자산	475,781,303	223,793,404	1,468,882,68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50,903,118	70,979,352	267,231,807
미수이자	110,727,502	137,959,022	365,460,171
선급비용	14,150,683	14,855,030	836,190,703
자 산 총 계	52,111,305,739	90,297,670,018	99,060,702,220
기타부채	1,378,987,480	2,109,748,117	2,095,205,572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50,427,813	48,004,284	315,601,956
해지미지급금	313,196,812	3,307,269	443,911
수수료미지급금	2,479,542	2,684,935	2,832,241
미지급이익분배금	912,883,313	2,055,751,629	1,776,327,464
부 채 총 계	1,378,987,480	2,109,748,117	2,095,205,572
원 본	45,208,163,224	82,776,995,351	88,959,013,727
이익잉여금	5,524,155,035	5,410,926,550	8,006,482,921
자 본 총 계	50,732,318,259	88,187,921,901	96,965,496,648
부채 및 자본 총계	52,111,305,739	90,297,670,018	99,060,702,220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6기	제5기	제4기
	2019.09.15 ~ 2020.09.14	2018.09.15 ~ 2019.09.14	2017.09.15 ~ 2018.09.14
운용수익(운용손실)	2,355,795,413	67,460,386	3,226,811,456
투자수익	1,548,981,626	1,974,127,061	1,853,203,688
이자수익	996,529,751	1,305,067,988	1,272,598,807
배당금수익	552,450,156	669,055,249	580,597,032
수수료수익	1,719	3,824	7,849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6,387,010,506	2,965,331,453	5,365,885,272
지분증권매매차익	3,202,670,616	1,433,306,990	4,202,144,032
채무증권매매차익	92,797,642	56,722,056	20,004,954
지분증권평가차익	3,012,190,769	1,179,872,762	1,105,373,944
채무증권평가차익	79,351,479	295,429,645	38,362,342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580,196,719	4,872,018,138	3,992,294,573
지분증권매매차손	5,168,397,672	2,730,929,153	2,032,898,322
채무증권매매차손	265,990,095	161,706,240	143,990,969
지분증권평가차손	143,723,410	1,979,100,008	1,807,337,891
채무증권평가차손	2,085,542	282,737	8,067,391
기타운용수익	0	20,010	17,069
운용비용	6,425,036	7,462,218	8,331,835
매매수수료	1,454,386	1,689,198	2,580,495
기타운용비용	4,970,650	5,773,020	5,751,34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349,370,377	59,998,168	3,218,479,621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34.59	0.68	37.3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7/09/15~2018/09/14	19,441	20,766	13,787	15,228	10,539	11,594	22,797	25,047
	2018/09/15~2019/09/14	22,797	24,848	3,005	3,258	7,541	8,146	18,440	19,902
	2019/09/15~2020/09/14	18,440	19,647	1,629	1,769	10,365	11,288	9,938	11,241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9/15~2018/09/14	353	377	853	945	577	642	631	695
	2018/09/15~2019/09/14	631	688	122	132	305	332	454	491
	2019/09/15~2020/09/14	454	484	108	118	278	300	290	3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7/09/15~2018/09/14	48,854	52,179	32,717	36,143	33,224	36,399	48,437	53,003
	2018/09/15~2019/09/14	48,437	52,794	7,306	7,926	11,442	12,409	44,485	47,820
	2019/09/15~2020/09/14	44,485	47,398	16,733	17,855	27,042	29,434	34,553	38,9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7/09/15~2018/09/14	598	639	1,583	1,755	870	964	1,314	1,444
	2018/09/15~2019/09/14	1,314	1,432	225	243	634	683	915	988
	2019/09/15~2020/09/14	915	975	258	282	616	670	567	6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2017/09/15~2018/09/14	2,000	2,018	0	0	0	0	2,003	2,087
	2018/09/15~2019/09/14	2,003	2,062	0	0	2,027	2,121	0	0
	2019/09/15~2020/09/14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17/09/15~2018/09/14	125	132	11	12	26	29	112	122
	2018/09/15~2019/09/14	112	121	5	5	19	21	99	106
	2019/09/15~2020/09/14	99	104	0	0	84	92	17	1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7/09/15~2018/09/14	191	204	953	1,061	517	574	629	692
	2018/09/15~2019/09/14	629	685	113	123	399	433	349	377
	2019/09/15~2020/09/14	349	371	143	158	230	250	266	3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2017/09/15~2018/09/14	10,000	10,029	14,643	15,000	9,812	10,231	14,831	15,373
	2018/09/15~2019/09/14	14,831	15,176	4,926	5,000	0	0	19,950	20,311
	2019/09/15~2020/09/14	19,950	19,952	9,617	10,000	29,925	28,136	0	0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으며,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 2019/09/15~ 2020/09/14	최근 2년 2018/09/15~ 2020/09/14	최근 3년 2017/09/15~ 2020/09/14	최근 5년 2015/09/15~ 2020/09/14	설정일 이후 2014/09/15~ 2020/09/14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6.14	2.53	2.64	3.17	3.37
수수료선취- 온라인(Ae)	6.41	2.78	2.89	3.43	3.6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5.72	2.12	2.23	2.76	2.9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6.2	2.58	2.69	3.22	3.4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0	0.8	1.62	1.54	1.1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2)	-5.98	-3.28	-1.12	0	-1.0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6.65	3.03	3.14	3.68	3.22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6.41	2.78	2.89	3.43	3.63
비교지수	6.79	2.15	1.65	2.73	2.23
수익률 변동성	8.83	6.95	6.21	5.27	5.15

주) 1. 비교 지수 : KOSPI x 30% + 국고채1년 x 7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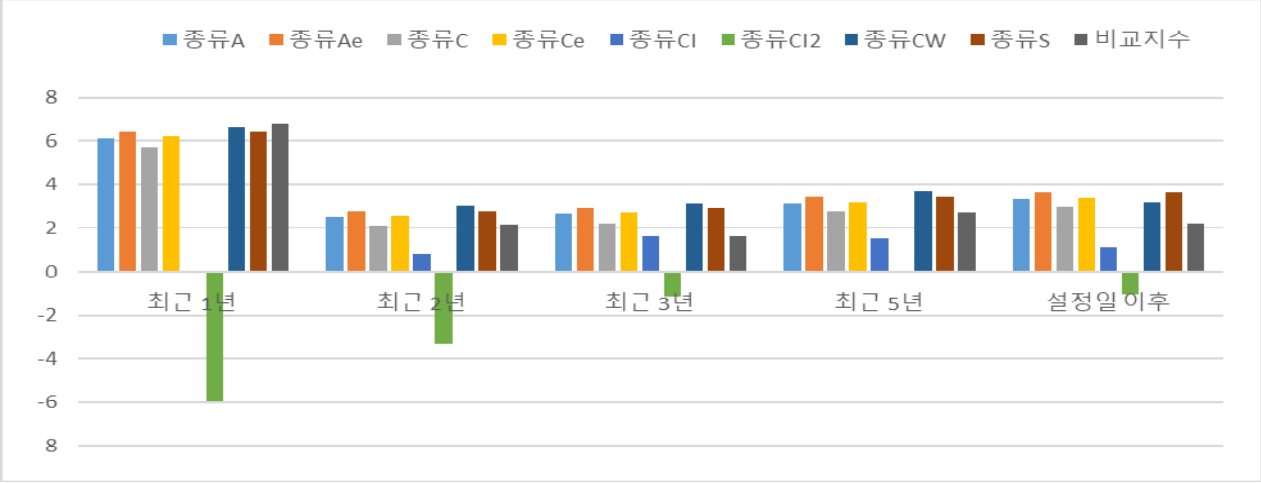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 간	최근 1년차 2019/09/15~ 2020/09/14	최근 2년차 2018/09/15~ 2019/09/14	최근 3년차 2017/09/15~ 2018/09/14	최근 4년차 2016/09/15~ 2017/09/14	최근5년차 2015/09/15~ 2016/09/14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6.16	-0.98	2.86	7.43	0.64
수수료선취- 온라인(Ae)	6.43	-0.73	3.12	7.7	0.89
수수료미징구-	5.74	-1.37	2.45	7.01	0.24

오프라인(C)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6.21	-0.93	2.91	7.48	0.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	1.62	3.27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2)	-5.99	-0.5	3.35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6.67	-0.48	3.38	7.96	1.1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6.43	-0.73	3.12	7.7	0.89
비교지수	6.81	-2.3	0.66	6.53	2.26

주) 1. 비교 지수 : KOSPI x 30% + 국고채1년 x 7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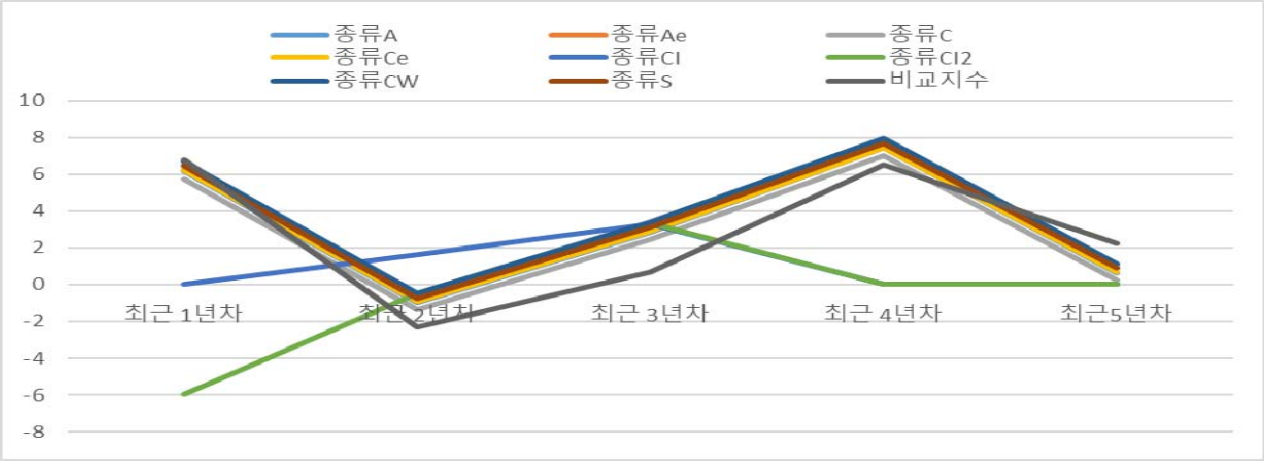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0.09.14. 기준)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원화	15,217	34,594	0	0	0	0	0	0	0	949	1,351	52,111
비중	(29.2)	(66.39)	(0)	(0)	(0)	(0)	(0)	(0)	(0)	(1.82)	(2.59)	(100)
합계	15,217	34,594	0	0	0	0	0	0	0	949	1,351	52,111
비중	(29.2)	(66.39)	(0)	(0)	(0)	(0)	(0)	(0)	(0)	(1.82)	(2.59)	(100)

※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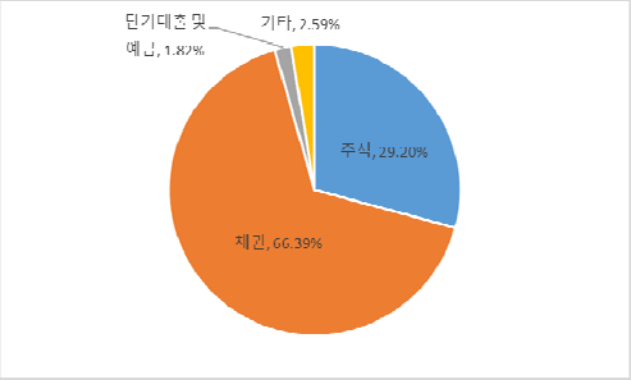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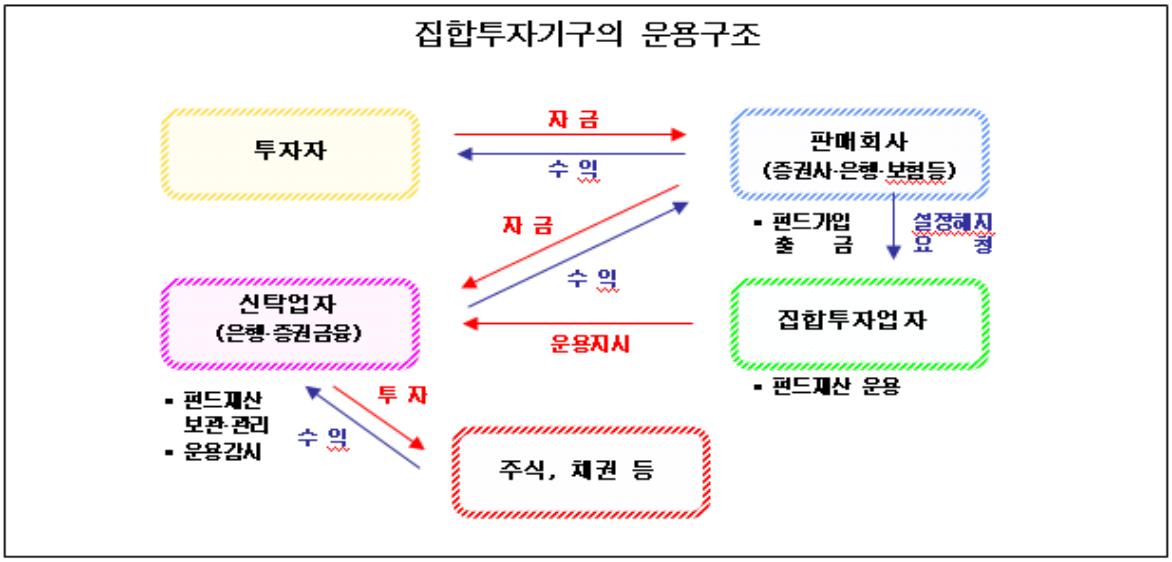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연락처 : 02-788-8400, www.i-ktb.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 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 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 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12.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 억원) 2014.11.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 억원) 2015.09.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 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자본금	152.1 억원
주요주주현황	KTB 투자증권㈜(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ㅇ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ㅇ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ㅇ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9.01.01 ~'19.12.31	'18.01.01 ~'18.12.31	계정과목	'19.01.01 ~'19.12.31	'18.01.01 ~'18.12.31
유동자산	44,995	53,019	영업수익	30,410	46,553
고정자산	4,604	3,769	영업비용	25,602	27,042
자산총계	**49,599**	**56,788**	**영업이익**	**4,808**	**19,511**
유동부채	4,726	9,761	영업외수익	2,204	124
고정부채	1,108	86	영업외비용	732	1,294
부채총계	**5,834**	**9,847**	**경상이익**	**6,281**	**18,341**
자본금	15,214	15,214	특별이익	-	-
잉여금	28,763	31,761	특별손실	-	-
자본조정	5	5	**세전순이익**	**6,281**	**18,341**
기타포괄손익	-216	-39	**법인세비용**	-721	4,197
자본총계	**43,765**	**46,941**	**당기순이익**	**7,002**	**14,144**

라. 운용자산 규모

(2020.08.31 현재, 단위: 억)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6,019	10,998	24,334	7,901	5,240	22,907	15,425	27,186	120,010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02-3770-8800)
홈페이지 주소	http://www.ksfc.co.kr
회사연혁등	설 립 일 : 1955.10.11. 자 본 금 : 3,400억원 수탁회사 등록 : 2002년 12월 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2) 주요업무

- ㅇ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ㅇ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ㅇ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ㅇ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ㅇ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ㅇ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ㅇ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ㅇ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ㅇ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www.kebis.co.kr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ㅇ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ㅇ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ㅇ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ㅇ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om	http://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ㅇ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ㅇ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ㅇ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ㅇ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ㅇ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ㅇ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ㅇ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ㅇ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ㅇ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KTB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i-ktb.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펀드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당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즉시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 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ktb.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 료), 프로그램 보유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시황,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